



(04167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(마포동, 신한디엠빌딩 13F) www.greennewdealexpo.com
 T. (02)719-6933(Ext. 503) F. (02)715-8245 E. expo@infothe.com

참가업체 정보

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-|--|-----|--|--------|--|
| 회사명 | 국문 | | | | | |
| | 영문 | | | | | |
| 주소 | 국문 | | | | | |
| | 영문 | | | | | |
| 연락처 | TEL | | FAX | | URL | |
| 대표자 | 성명 | | 휴대폰 | | E-mail | |
| 담당자 | 성명 | | 직위 | | 부서 | |
| | 전화 | | 휴대폰 | | E-mail | |
| ※전자세금계산서 | 담당자 | | 연락처 | | E-mail | |
| 전시품목 | | | | | | |

부스 신청

| | 부스타입 | 단가 (VAT 별도) | 신청부스 | 합계 (VAT 별도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| 독립부스 (전시면적 제공) | 2,000,000원/부스 ※1부스 = 9m ² (3m × 3m) | _____ 부스 | _____ 원 |
| | 조립부스 (전시면적+기본장치 제공) | 2,400,000원/부스 ※1부스 = 9m ² (3m × 3m) | _____ 부스 | _____ 원 |

참가비 납입방법

- 참가신청서에 서명(인) 날인 혹은 서명 후,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(02-715-8245) 또는 이메일(expo@infothe.com)로 송부바랍니다.
- 참가신청서 접수 후, 15일 이내에 계약금(참가비의 30%)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021년 5월 1일 이후 참가 취소 시에는 참가비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.
(GREEN NEW DEAL EXPO 2021 전시회 참가규정 제6조)
- 참가계약금 및 잔금은 신청서 접수 후 회신된 인보이스 상의 일정에 따라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입금계좌 : 우리은행 / 1005-001-335394 예금주 : (주)인포더

- 전시회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"GREEN NEW DEAL EXPO 2021 참가규정"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당사는 GREEN NEW DEAL EXPO 2021과 킨텍스의 참가규정을 준수하며, 상기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.

제1조 용어의 정의

- ① '전시자'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
- ② '전시회'라 함은 'Green New Deal Expo (세계 그린뉴딜 엑스포)'를 말한다.
- ③ '주관자'라 함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(마포동, 신한디엠빌딩 13층)에 소재하고 있는 (주)인포더(Inforthe)를 말한다.

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

- ①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신청금(부스 참가비)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청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규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,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통보 후,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환할 수 있다.
- ③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,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.

제3조 전시부스 배정

- ① 주관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시품의 성질 등을 감안한 주최자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.
- ②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4조 전시실 관리

-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사전 허가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, 주관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,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,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.
- 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정, 기둥, 벽면 등에 페인트 칠, 접착제 등으로 원상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- ⑥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 참가비 납입조건

-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 30%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2021년 5월 14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.

제6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

- ①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,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- ② 전시자의 참가신청 취소로 인한 위약금 납부는 2021. 03. 01~2021. 04. 30까지는 전체 참가비(부스비) 또는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며, 2021. 05. 01일 이후부터는 전체 참가비(부스비) 또는 축소분의 100%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규정한다.

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

- ①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

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면적 내로의 장치,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

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,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전시장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

- ①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.
- ②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중에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이나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,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1조 방화규칙

-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선행되어져 있어야 한다.
- ②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보충규정

- ①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,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전시자는 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분쟁해결

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판정에 따르며,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